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81 발의연월일: 2020. 11. 18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이종배 · 허은아

권명호 · 이종성 · 이 영

김기현 • 이주환 • 김영식

송언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,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.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있음.

이에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 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(안 제48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48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3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(이하 "연구활동종사자"라 한다)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	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
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	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
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<u><신 설></u>	제48조의3(연구활동종사자에 대
	한 특례) ① 「산업재해보상보
	험법」 제123조제2항에 따라
	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
	활동종사자(이하 "연구활동종
	사자"라 한다)의 산재보험료
	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
	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	하는 금액으로 한다.
	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
	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
	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
	<u>다.</u>